

제28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일 반 의 안  
(8건)

거 창 군



# --- 목 차 ---

의 안 번 호	건 명	페이지
2024 - 113	(재)경남연구원 출연 동의안(기획예산담당관)	1
2024 - 114	(재)거창군장학회 2025년 출연 동의안(인구교육과)	7
2024 - 115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재무과)	13
2024 - 116	2024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재무과)	19
2024 - 117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경제기업과)	25
2024 - 118	거창화강석 연구센터 출연 동의안(산림과)	33
2024 - 119	서북부경남거점APC 민간위탁 동의안(농업기술과)	45
2024 - 120	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 민간위탁 동의안(보건정책과)	57



# 경남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안 번호	2024 - 113
----------	------------

제출자	거창군수
-----	------

## 1. 제안이유

가. 국정 방향에 부합하는 주요 현안에 대한 거창군 정책 발굴 및 발전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경남도 출연기관인 경남연구원에 출연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출연개요

- 1) 출연대상 : 경남연구원
- 2) 사업내용

- 민선 8기 국정 방향에 부합한 부문별 비전·전략을 제시하는 정책연구
- 거창군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 발굴 등

### 나. 출연금 요구액 : 50,000천원

- 1) 2025년 예산편성 요구사항

(단위 : 천원)

사업기간	2024년 예산액	2025년 요구액	재 원 별				
			계	균 특	도 비	군 비	기 타
2025년	-	50,000	50,000	0	0	50,000	

### 다. 부서의견

- 1) 경남연구원의 정책연구 성과 등을 활용하여 거창군의 인구, 관광, 문화, 농업 등 분야별 거창군 발전 전략 마련을 위한 정책 기획연구를 추진하기 위해 출연금 지원 필요

## 3. 관련법규 및 조례

가.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8조

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다.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라. 「경남연구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의2

## 4. 참고사항

가. 출연기관 현황

□ **지방재정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591호, 2023. 8. 8., 타법개정]

-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 5. 2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 5. 28.>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 ③ 삭제 <2013. 7. 16.>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8.>
-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 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 5. 28.>
-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4. 5. 28.>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약칭: 지방출자출연법)

**제20조(재정 지원)**

-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을 할 수 없다.
- ③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교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약칭: 지방연구원법 )

제13조(운영재원)

- ① 지방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 1. 제2항에 따른 출연금 및 보조금
  - 2. 제14조에 따른 수익사업으로 생긴 수익금
  - 3. 그 밖의 수입금
-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연구원에 필요한 출연금 및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교부할 수 있다.
- ③ 지방연구원의 재산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 5. 30.]

□ 경남연구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3. 8. 3.] [경상남도조례 제5503호, 2023. 8. 3., 일부개정]

제5조의2(운영재원) <본조신설 2019.6.7.>

- ① 연구원의 운영경비는 기금의 과실 및 연구원의 수익금 등으로 충당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금 및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설립목적**

- 지역경제·사회발전, 지역발전 분야에 관한 제반과제에 대한 현실적이며, 체계적인 조사 연구활동을 통하여 지역단위의 정책개발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제·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설립근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 「민법」 제32조,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동법 시행령 제5조
- 「경남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연 혁**

- 1992. 07. 18. : 재단법인 설립 허가
- 1992. 08. 05. : 재단법인 설립 등기
- 1992. 12. 10. : 경남개발연구원 개원
- 2000. 03. 08. : 경남발전연구원 명칭 변경
- 2019. 07. 15. : 경남연구원 명칭 변경

**□ 주요기능**

- 경남의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및 정책개발
- 자치분권과 경남지방정부 발전 연구
- 지역경제 및 산업정책 연구·개발 및 미래 첨단신기술 전략 연구
- 도시계획·교통·환경·문화·관광·농어촌 분야의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개발
- 재정·민자 투자사업의 타당성 분석 및 조사·연구
- 여성의 지위 향상과 사회참여 확대·강화를 위한 여성정책 개발
- 경남의 얼 고취 및 역사문화 정책개발과 문화유산의 발굴·보존
- 지역발전을 위한 국내 및 국외 협력 강화와 관련 연구
- 기타 연구원 고유업무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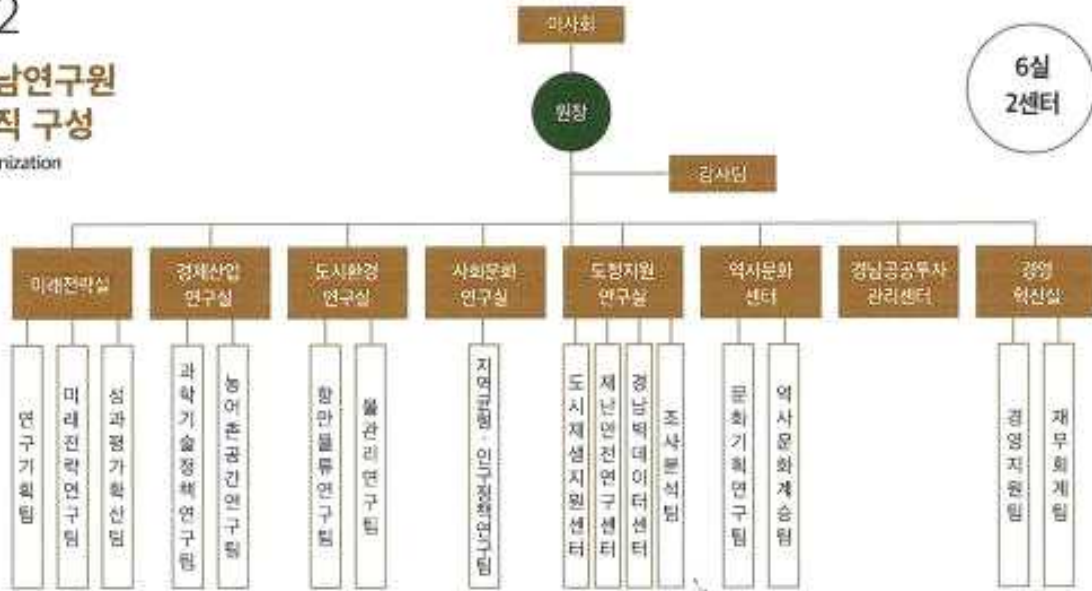


# □ 조직 현황(6실 2센터)

02

## 경남연구원 조직 구성

Organization



6실  
2센터





# (재)거창군장학회 2025년 출연 동의안

의안 번호	2024 - 114
----------	------------

제출자	거창군수
-----	------

## 1. 제안이유

가. 수요 맞춤형 다양한 장학사업 운영을 위한 장학기금 확대 조성, 학비 부담 경감 및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대학생 등록금을 지원하기 위해 장학회 출연금을 증액하고자, 이에 의회 승인을 받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개 요

- 1) 근 거 :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 2) 출 연 금 : 4,695백만원(증 1,000백만원)

구 분	2024년 편성액	2025년 요구액	증 감
계	3,695	4,695	1,000
거창군 지역 출신 대학생 등록금 지원	-	1,000	1,000
한국승강기 대학교 등록금 지원	780	780	-
장학기금 확대	2,250	2,250	-
장학사업 추진	665	665	-

3) 내 용

- 맞춤형 장학사업 추진을 위한 장학기금 확대 조성(2,250백만원)
-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지원 및 청소년 국제화 교류사업(665백만원)
- 한국승강기대학교 등록금 지원(780백만원)
- 거창군 지역출신 대학생 등록금 지원(1,000백만원) ※ 2025년 신규추진

나. 부서의견

- 1) 학생과 학부모의 학비 부담 경감, 인구 유입 도모로 지역소멸에 대응하고자 거창군 지역 출신 대학생 등록금 지원 필요
- 2) 지역 우수 인재를 육성하고,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장학기금 확대 조성 및 출연금 증액 필요

### 3. 참고사항 : 붙임 참조

#### 가. 관련법령

- 1)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 2)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0조
- 3)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 나. 거창군장학회 현황

○ **지방재정법**

-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8.>
-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 5. 28.>
-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4. 5. 28.>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 사업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 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1. 문화, 예술, 장학(獎學),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2.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하는 비율을 산정할 때에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출자·출연 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출자하거나 출연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 12. 3.>
- ③ 출자·출연 기관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설립 목적
  2. 주요 업무와 사업
  3. 출자 또는 출연의 근거와 방법
  4. 그 밖에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제20조(재정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을 할 수 없다.

③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교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거창군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재산의 조성)** 장학회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거창군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개인·법인 또는 단체의 자발적인 출연금과 그 밖의 재산
3. 기본재산의 운용 및 수익사업경영을 통한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 붙임2

## 거창군장학회 현황

설립근거	법 률 : 교육기본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 례 :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화번호 : 055-940-8812				
				홈페이지 : www.gcdream.kr				
주요연혁	- 설립연도 : 2005. 12. 16. - 장학기금 100억원 달성 : 2009년		기관형태 (출자, 출연)		출연기관			
직원현황 ('24. 9. 현원기준)	계		정규직		비정규직			
	0명		0명		0명			
임 원 ('23. 9.기준)	직 책	성 명	주요경력		임 기			
	이사장	구인모	거창군수		재직기간(당연직)			
	상임이사	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거창군협의회장		2년(2023.12.26.~2025.12.25.)			
	이 사	김○○	거창교육지원청교육장		재직기간(당연직)			
	이 사	조○○	거창군산림조합장		2년(22.12.24. ~ 24.12.23.)			
	이 사	안○○	거창문화원장		2년(2023.12.26. ~ 2025.12.25.)			
	이 사	김○○	바르게살기운동 거창군협의회장		"			
	이 사	신○○	승강기밸리기업협의회장		"			
	이 사	이○○	한국예총 거창지회장		2년(22.12.24. ~ 24.12.23.)			
	이 사	박○○	거창80번택시 이사		"			
	이 사	조○○	거창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대표		"			
	이 사	박○○	거창3·1정신계승발전위원장		2년(2023.12.26. ~ 2025.12.25.)			
	이 사	강○○	거창군 상공협의회장		"			
	이 사	마○○	남성의용소방대연합회장		"			
	이 사	강○○	거창빼제오미자 대표		"			
	이 사	김○○	(사)한국외식업중앙회 거창군지부장		"			
	감 사	이○○	거창군학원연합회장		"			
	감 사	윤○○	행정동우회 거창군분회장		"			
주요기능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사업 및 필요한 지원							
자본금 (단위:백만원)		11,676 (직전연도말 기준)			출자·출연액 (단위:백만원)		3,695 (직전연도말 기준)	
최근3년간 예산 현황 (단위:백만원)	연도	2022	2023	2024	재무현황 (백만원) 23. 12. 31.기준	자산	14,040 (자산 총액)	
	예산액	1,683	4,293	5,375		부채	2,363 (부채 총액)	
	지자체 지원액	725	2,975	3,695		자본	11,676 (자본금 총액)	
경영성과 (단위:백만원) 23. 12. 31.기준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1,720				1,059		661	

**참 고****2024년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주요사업 현황**

기본재산 확대 조성 : 2,500,000천원(출연금 2,250,000 기부금250,000)

장학생 선발 : 281명 / 378,697천원

분 야	인원(명)	장학금 지급내역(천원)	
		1인당	지급 총액
계	281		378,697
고등학교 재학 장학생	54	500	27,000
수능성적 우수자 특별장학생	19	1,000	19,000
대학 입학 장학생	35	2,000	70,000
대학 재학 장학생	101	2,000	202,000
지역대학 육성 장학생	30	1,000	30,000
출향 향우 자녀 고향사랑 장학생	2	1,000	2,000
지정장학생	2	1,500	3,000
만학도장학생	14	300	4,200
예·체능 및 과학 특기장학생	24	500 ~2,000	21,497

인재육성사업 추진 : 1,020,000천원

(단위 : 천원)

연번	사업명	예산액	사업내용	비고
	계	1,020,000		
1	진로·진학 지도사업	50,000	관내 고등학교 진로 탐색 활동, 대학입시 지도 등 지원	
2	특기적성 프로그램 지원사업	80,000	관내 초·중학교 미술, 체육 등 특기 프로그램 운영 지원	
3	두드림(DO DREAM) 사업	70,000	저소득층 중·고등학생 국·영·수 교과목 학원비 월 100천원 지원	
4	사이버스쿨(전화·화상 영어) 운영	40,000	초·중학생 전화 화상 영어수업 등	
5	한국승강기대학교 등록금 지원	780,000	한국승강기대학교 등록금 지원	

교육여건 개선사업 추진 : 665,000천원

(단위 : 천원)

연번	사업명	예산액	사업내용	비고
	계	665,000		
1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지원	500,000	초·중·고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인건비 등 지원	
2	청소년 국제화 교류사업	165,000	해외 소재 자매결연 학교와 교류 경비 지원	



#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안 번호	2024 - 115
----------	------------

제출자	거창군수
-----	------

## 1. 제안이유

가. 지방세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이와 관계된 지방자치단체 사업과 쟁송사무 지원, 세수 증대를 위한 세제개편·제도개선 등 정책 개발을 위해 출연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출연개요

- 1) 근 거 : 「지방세기본법」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 2) 기 관 : 한국지방세연구원(이사장 정종섭)
- 3) 내 용
  -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세정공무원 교육 참가)
  - 지자체의 세수 증대를 위한 세제개편 및 제도개선 등 정책개발
  - 지방세 불복사건 자문 등 쟁송사무 지원

### 나. 출연금액 : 4,796천원

- 1) 2025년 예산편성 요구액

【단위 : 천원】

구 분	2024년	2025년	재 원 별				
			계	균 특	도 비	군 비	기 타
출연금	4,769	4,796	4,796	0	0	4,796	

※ 산출기초 : '23년 결산 보통세 39,970,184천원 × 1.2/10,000

### 다. 부서의견

- 1) 한국지방세연구원을 활용하여 지방자치단체 세수 증대를 위한 세제 개편 및 제도 개선 등 정책개발을 위해 출연금 지원 필요

## 3. 관련법규

- 가. 「지방재정법」제18조
- 나. 「지방세기본법」제151조 내지 제1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 4. 참고사항

- 가. 출연기관 현황
- 나. 기타 참고자료(출연금 협조 공문 등)

**붙임1**

**출연기관 현황**

[ 기관명 : 한국지방세연구원(서울 소재) ]

설립근거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운영)				☎ 02-2071-2726		
					www.kilf.re.kr		
주요연혁	2011. 2. 설립등기, 2011. 4. 개원		기관형태		출연기관		
인원현황 (2024년 7월 현원기준)	○ 정원 88명 / 현원 71명						
	구분	계	원장	관리직	연구직	전문직	사무직등
	정원	88명	1명	3명	56명	5명	23명
	현원	71명	1명	3명	40명	4명	23명
	총인원	97명					정원의외 인원 26명 (파견공무원13, 위촉연구·전문원8, 행정원등5)
임원 (2024년 7월 현원 기준)	직책 (직책명)	성명	주요경력				비고
	이사장	정종섭	한국지방세연구원 이사장				
	부이사장	박우량	전라남도 신안군수				
	이사	강성조	한국지방세연구원 원장				
	이사	김성기	행정안전부 지방세제국장				
	이사	김진만	서울특별시 재무국장				
	이사	이상호	세종특별자치시 자치행정국장				
	이사	김종필	전라북도 자치행정국장				
	이사	최명동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장				
	이사	류규하	대구광역시 중구청장				
	이사	서동욱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이사	이남철	경상북도 고령군수				
	이사	박관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센터장				
	감사	이화진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장				
	감사	김경태	부산광역시 기획조정실장				
주요기능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설립자본금 (단위:백만원)	1 (직전연도말 기준)				출자·출연액 (단위:백만원)	127,411	지자체가 출자·출연한 금액 (‘11년~’24년)
최근3년간 예산 현황 (단위:백만원)	연도	2021	2022	2023	재무현황 (백만원) ‘23.12.31기준	자산	25,335
	예산액	12,805	18,069	17,379		부채	1,587
	지자체 지원액	10,422	13,797	12,383		자본	23,748

10월 전국체전 개최! "경남과 함께 다시뛰는 대한민국"



경 상 남 도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협조

- 1.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2870호(2024. 8. 12.)와 관련입니다.
- 2.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 확정내역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2025년도 예산 편성안에 차질없이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025년도 출연금 집계표 1부, 끝.

|

경 상 남 도 지 사



수신자 창원시장(세정과장), 진주시장(세무과장), 통영시장(세무과장), 사천시장(세무과장), 김해시장(세정과장), 밀양시장(세무과장), 거제시장(세무과장), 양산시장(세무과장), 의령군수(재무과장), 함안군수(세무회계과장), 창녕군수(재무과장), 고성군수(재무과장), 남해군수(재무과장), 하동군수(세정관리과장), 산청군수(재무과장), 함양군수(재무과장), 거창군수(재무과장), 합천군수(재무과장)

주무관 정지공 세정과장 전결 2024. 8. 12. 서창우

협조자

시행 세정과-10732 (2024. 8. 12.) 접수 재무과-21896 (2024. 8. 12.)

우 51154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사림동) / gyeongnam.go.kr

전화번호 055-211-3717 팩스번호 055-211-3719 / jg1116@korea.kr / 비공개(5)

함께 걷는 행복, 함께 웃는 건강!

## 2025년 지방세연구원 자치단체별 출연금 산정내역

(단위 : 천원)							
지방자치단체명	㉠ '23년 결산 지방세	'23년 결산 보통세			'25년 출연금		
		㉡ 소계(㉠+㉢)	㉢ 현년도㉠	㉣ 과년도㉠	㉤ '24년 정산액	㉥ '25년 출연분 (㉡+1,2/10000)	㉦ '25년 출연금 (㉤=㉥+㉧)
전국합계	113,185,663,215	103,459,034,988	103,224,020,324	235,014,665	-	12,415,084	12,415,084
경남도 소계	6,426,449,245	5,921,204,429	5,918,454,110	2,750,319	-	710,545	710,545
경남도 분청	3,703,253,992	3,226,163,358	3,237,290,844	-	11,127,486	-	387,140
참원시	890,530,646	862,376,464	855,195,083	7,181,381	-	103,485	103,485
진주시	240,812,439	240,812,439	245,668,796	-	4,856,357	-	28,897
통영시	77,311,581	77,311,581	74,119,317	3,192,264	-	9,277	9,277
사천시	97,560,779	97,560,779	96,814,423	746,356	-	11,707	11,707
김해시	421,291,576	421,291,576	414,397,549	6,894,027	-	50,555	50,555
밀양시	103,214,634	103,214,634	102,418,893	795,741	-	12,386	12,386
거제시	160,910,708	160,910,708	166,680,908	-	5,770,200	-	19,309
양산시	313,424,730	313,424,730	309,106,325	4,318,405	-	37,611	37,611
의령군	27,833,637	27,833,637	27,586,370	247,267	-	3,340	3,340
합안군	84,747,879	84,747,879	84,306,200	441,679	-	10,170	10,170
창녕군	54,281,411	54,281,411	53,683,328	598,083	-	6,514	6,514
고성군	49,216,680	49,216,680	50,596,193	-	1,379,513	-	5,906
남해군	30,381,948	30,381,948	30,155,555	226,393	-	3,646	3,646
하동군	33,047,526	33,047,526	32,917,948	129,578	-	3,966	3,966
산청군	32,591,707	32,591,707	32,324,024	267,683	-	3,911	3,911
함양군	33,299,350	33,299,350	33,040,928	258,422	-	3,996	3,996
거창군	39,970,184	39,970,184	39,495,896	474,348	-	4,796	4,796
합천군	32,767,838	32,767,838	32,655,590	112,248	-	3,932	3,932

페이지 20 / 10 나

## □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운영)** ①지방세입 제도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이와 관계된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위한 지원 등을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운영하는 법인으로 지방세연구기관(이하 “지방세연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 ①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특별시의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를 제외하고, 특별시 관할구역의 자치구의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교부받은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중략)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제1항에 따른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①법 제152조 제1항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합한 비율을 말한다.<개정 2019. 12. 31., 2020. 9. 8.>

1. 1만분의 1.2

②법 제152조 제1항후단에 따라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

1.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 2024년도 제5차 수시분 거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안 번호	2024 - 116
----------	------------

제출자	거창군수
-----	------

## ① 북상 병곡지구 소규모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처리장 부지 매입)

### 1. 제안이유

가. 2024년 환경부 소관 공공하수도 설치 신규사업으로 선정된 북상 병곡 지구는 거창군 대표 여름 관광지로서 하수처리시설 설치를 통해 지역 주민과 관광객의 보건위생 향상과 하수의 적정 처리로 공공수역 수질개선을 도모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취득개요

- 1) 사업명 : 북상 병곡지구 소규모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 2) 위치 : 거창군 북상면 병곡리 70-3번지 일원
- 3) 사업기간 : 2024. 1. ~ 2027. 12.
- 4) 사업비 : 7,651백만원(국 4,591, 기 1,836, 도 612, 군 612)
- 5) 사업내용 : 처리장 신설 Q=240m<sup>3</sup>/일, 하수관로 L=5.7km 등

#### 나. 취득재산 세부내역

재산 종별	재산의 표시			기준가격 (천원)	비고
	소재지	지목	면적(m <sup>2</sup> )		
<b>계</b>				<b>2,377</b>	<b>30,901</b>
토지	거창군 북상면 병곡리 70-3	답	1,185	15,405	공시지가 13,000원 /m <sup>2</sup>
토지	거창군 북상면 병곡리 70-4	답	1,192	15,496	공시지가 13,000원 /m <sup>2</sup>

#### 다. 추진경과

- 1) 2022.12. : 거창군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반영
- 2) 2024. 3.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시행
- 3) 2024. 7. 23. : 하수처리장 부지 선정(안) 등 주민설명회
- 4) 2024. 8. 6. : 하수처리장 부지 소유자 사전 협의
- 5) 2024. 8. 14. : 현장 감정평가 실시

## 라. 향후계획

- 1) 2024.10. : 하수처리장 공법 선정
- 2) 2024.11. : 하수처리장 부지 보상 협의
- 3) 2024.12. : 환경부 재원 협의 및 기술 자문, 각종 인허가 협의
- 4) 2025. 3.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완료
- 5) 2025. 4. ~ 8. : 건설사업관리용역 착수, 공사 발주 및 착공
- 6) 2027.12. : 시운전 완료 및 공사 준공

## 마. 기대효과

- 1) 미처리 하수의 방류로 인한 공공수역의 수질오염 방지와 분계천 수질개선 및 지역주민의 공중보건 위생 향상
- 2) 지역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관광지 이미지 개선

## 3. 관련법규 및 조례

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 제16조

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7조

다.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

## 4. 위치도 및 현황사진 : 첨부 참조



**첨부1**

**위치도 및 전경사진**



위 치 도



현 장 사 진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55조에 따른다.

④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①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문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심의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2. 제11조에 따라 행정재산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
3. 제11조에 따라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
4. 제12조 단서에 따라 무상으로 회계 간의 재산 이관을 하는 경우
5. 제24조 또는 제34조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6. 그 밖에 공유재산의 관리·처분 등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가격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재산

**2.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면적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토지**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해야 한다.

1. 사업목적 및 용도
2. 사업기간
3. 소요예산
4. 사업규모
5. 기준가격 명세
6. 계약방법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따른 무상 귀속
2. 「도시개발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환지
3. 법원의 판결에 따른 소유권 등의 취득 또는 상실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득(「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나목 또는 마목의 기반시설을 설치·정비 또는 개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처분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1조에 따른 무상양여
6.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대한 공장용지 매각
7. 지방의회의 의결 또는 동의를 받은 재산의 취득·처분
8. 「지방세법」 제117조에 따른 물납
9.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적용이 배제된 재산의 취득·처분
10.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취득·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취득·처분
11.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 또는 사업승인 시 조건에 의하여 주된 사업대상물에 딸린 공공시설의 취득
12. 공유재산을 종전과 동일한 목적과 규모로 대체하는 재산의 취득

##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5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군수는 법 제10조2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군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재산관리관의 공유재산 취득·처분(안)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이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공유림에 대하여는 공유림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취득·처분하여야 할 재산에 대하여는 그 소관으로 할 재산관리관이 사전에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재산관리관은 제3항에 따라 취득·처분하여야 할 재산이 확정되거나 변동이 있으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영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 및 처분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

2. 1건당 기준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2천제곱미터

##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하여야 하는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부서의 장은 그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련한 계획을 세운 후 지체 없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반영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의안 번호	2024 - 117
----------	------------

제출자	거창군수
-----	------

## 1. 제안이유

가. 고물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신용보증 재원을 확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함.

## 2. 주요내용

가. 출연 개요

1) 근거법령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기본재산)

2) 대 상 :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효근)

3) 사 업 비 : 450,000천원(군비)

- 2025년 예산편성 요구사항 (단위 : 백만원)

사업 기간	2024년 예산액	2025년 요구액	비 고
2025년	450	450	

4) 사업내용 : 관내 소상공인 신용보증

나. 부서의견

1) 고물가, 고금리 장기화 등으로 소상공인 경영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어려운 상황으로,

2) 경영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금융 보증지원과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출연이 필요함

3) 경남도내 타 시·군 출연금 지원현황 및 경남도와 신용보증재단 시·군 출연금 요청사항 등을 반영하여 결정하였음.

## 3. 참고사항 : 붙임

가. 관련 법령

나. 경남신용보증재단 현황

다. 관련 공문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기본재산)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금융회사등의 출연금
  3. 기업의 출연금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자의 출연금
- ② 정부는 재단의 기본재산 확충을 위하여 시·도에 보조할 수 있다.
- ③ 금융회사등은 그 대출금에 대하여 연 비율 1천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을 재단 및 중앙회에 출연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이 출연한 금액을 재단 및 중앙회에 배분하는 기준은 재단의 보증실적, 시·도 및 중앙회의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 제3항의 대출금의 범위, 출연의 방법 및 시기, 그 밖에 출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경남신용보증재단

설립근거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전화번호: 1644-2900 홈페이지: www.gnsinbo.or.kr		
주요연혁	1996.06.05. 경남신용보증조합 설립 2000.03.20. 경남신용보증재단 전환			기관형태 (출자, 출연)		출연	
인원현황 (‘24. 8. 31 현원기준)	계		정규직		비정규직		
	126명		117명 * 이사장 포함		9명		
임원 (‘24. 9. 기준)	직책 (직책명)	성명 (익명처리)	주요경력 (가장 최근의 1개 경력만 기재)			임기 (법령상 정해진 임기 기재)	
	이사장	이**	경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			‘23.1.1~’ 24.12.31	
	비상임이사	손**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24.3.18~ (당연직)	
	〃	이**	경상남도 경제통상국장			‘24.1.1~ (당연직)	
	〃	여**	경남은행 창원영업본부장			‘23.6.1~’ 25.5.31	
	〃	김**	NH농협은행 경남영업부장			‘23.6.1~’ 25.5.31	
	〃	장**	(주)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상임이사			‘22.9.1~’ 25.5.31	
	〃	신**	(주) 경남소상공인연합회장			‘22.9.1~’ 25.5.31	
	노동이사	박**	경남신용보증재단 차장			‘23.4.7~’ 23.4.6	
	감사	김**	다음회계사무소이사			‘24.9.1~’ 26.8.31	
주요기능	신용보증, 신용조사, 구상채권관리, 기본재산 관리, 경영지도						
자본금 (단위:백만원)		345,994 (직전연도말 기준)			출자·출연액 (단위:백만원)		159,656 (직전연도말 기준)
최근 3년간 예산현황 (단위:백만원)	연도	2022	2023	2024	재무현황 (백만원) ’23.12.31 기준	자산	426,710 (자산 총액)
	예산액	386,144	462,427	519,957		부채 <sup>1)</sup>	80,716 (부채 총액)
	지자체 지원액*	20,750	16,050	15,050		자본 <sup>1)</sup>	345,994 (자본금 총액)
경영성과 (단위:백만원) ’23.12.31 기준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42,113				72,889		△30,776



# 경남신용보증재단



수신 거창군수(경제기업과장)  
(경유)

제목 2025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요청(거창군)

1. 거창군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엔데믹 이후 시작된 고금리·고물가의 여파에 소상공인의 금융부담은 가중되고 내수 경기회복이 지연되면서 빚을 갚지 못하는 자영업자가 늘고, 지난해 폐업 신고한 사업자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지역경제 뿌리인 소상공인들이 힘들며 지면서 우리 재단의 대위변제액도 역대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3. 어려운 경제여건에서도 지역 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성장과 안정, 이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인하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보증공급을 위해서는 충분한 기본재산이 확보되어야 하는 만큼 불임과 같이 출연을 요청드리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향후 지역 소상공인의 성공지원을 도모하기 위해 道·시군·재단 참여 합동 워크숍을 개최예정(8.9) 이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별도 공문 발송예정)

붙임 : 2025년 거창군 출연금 협조요청 1부. 끝.」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2024. 7. 26.
★@파장	김정부	부장	김종은	본부장	<i>김정부</i>	이사장 이효근
합의자						
시할	공업기록 2024-967	(2024. 7. 26.)	접수	경제기업과-48668	(2024. 7. 26.)	
주 -	경상남도 창원시 진산구 원이대로 382, 4층(창원컨벤션센터)					/ <a href="https://gnsinbo.or.kr/">https://gnsinbo.or.kr/</a>
전화번호	065)716-6126	팩스번호	065)717-0104	/ <a href="mailto:kimj@gnsinbo.or.kr">kimj@gnsinbo.or.kr</a>		/ 대국민 공개



# 2025년 거창군 출연금 협조요청

## □ 출연근거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10조5호(기본재산에 관한 사항)
  - \* 재단의 기본재산은 지자체의 출연금, 정부의 출연금, 금융기관 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함
- 「경남신용보증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기본재산의 조성)
  - \* 정부출연금, 도·시·군 출연금, 금융기관 출연금, 기타 기관·단체 출연금, 보증료 등
- 「경남신용보증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행정지원)
  - \* 도지사는 안정적 재단 운영을 위해 시·군 및 유관기관에 출연금을 요청할 수 있음

## □ 재단현황

- 지난해 폐업신고 사업자 역대 최대폭으로 증가하는 등 경제환경 악화
  - 경남 폐업자 5년 새 최대치인 5만6천여명으로 재단 부실 연결 가능성 有
  - \* '23년 노란우산공제 폐업 공제금 경남 4위(679억원)으로 높은 순위 기록
- '08년 금융위기 후 부실추이와 코로나 종식 후 부실추이 매우 유사
  - '24년말 예상 대위변제율 6.58% → '25년도 6% 후반대 예상
- 지역경제 활성화의 직접적 효과를 누리는 시·군의 출연비중 저조
  - '23년말 시·군 출연금 구성비 : (경남) 13.5%, (도단위타재단) 16.6%

## □ 거창군 주요실적 현황

구분	총보증공급*		보증잔액**		대위변제*** 순증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4년 상반기 실적	992건	252억원	2,691건	494억원	106건	14.1억원

\* 총 보증공급 : 신규보증, 기한연장, 기보증회수보증(대환보증)을 모두 포함한 실적

\*\* 보 증 잔 액 : 기준일(24.06.30.) 현재 재단을 이용중인 건수 및 금액

\*\*\* 대 위 변 제 : 고객이 채무를 상환하지 못해 재단이 채권은행에 채무를 대신 변제하는 것  
(대위변제 순증 = 대위변제 발생 - 대위변제 회수)

○ '23년 신규보증지원 효과

구분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
신규보증 1억원 당	1.86억원	0.84억원	2.02명	0.94명

○ '23년 개인사업자 신용대출 대비 보증대출의 금리 절감효과

구분	제1금융권 대비	제2금융권 대비
총 금융비용 절감효과	71.7억원	622.3억원

\* 출처 : 「2023 소기업·소상공인 신용보증 지원효과 분석 보고서」, 신용보증재단 중앙회

## □ '25년 보증운용 방향

- (운용배수) 고금리 장기화 대응, 도내 소상공인 금융비용 부담완화를 위한 정책자금 규모 확대를 위해 **한시적 운용배수 페널티 적용 유보, 인센티브 유지**  
- 정책자금 확대 위해 출연요청액과 별개로 **출연기준액으로 운용배수 결정**

구분	100% 초과분	100%	70% ~ 99%	70%미만
운용배수	기준액 충족 시 최대 15배		정책자금 확대 위해 차등시스템 한시적 유보 → <b>12배 적용</b>	

- (보증한도) 수익자부담 원칙 적용 지역별 **출연액 비례 보증한도 배분**  
- 도 정책자금 및 재단의 일반보증 지역별 한도배분시 출연액 감안 예정
- (인센티브) 출연협조 우수 시·군 선정 → **재단 컨설팅 확대**  
- 출연 우수 시·군을 선정, 감사패 전달 및 인센티브 적용

## □ 거창군 출연요청액 : **최소 4.5억원**

- (출연배분) 배분항목을 6개로 세분화하여 **공정성 및 형평성 제고**

구분	총보증공급	보증잔액	대위변제	재정자립도	GRDP	사업체수
비율	25%	25%	25%	10%	10%	5%

- 거창군 최근 5개년 출연 및 대위변제 현황

구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합계
출연금액	3.5억원	2.5억원	3.0억원	4.0억원	4.5억원	17.5억원
대위변제액	4.1억원	5.4억원	4.3억원	16.3억원	14.1억원 (6. 30. 기준액)	44.2억원

참고 1. '25년 거창군 출연 요청액

2. 거창군 정책자금 운용배수별 보증규모(예). 끝.

## 참고1

# '25년 거창군 출연 요청액

(기준일자 : '24.6.30. 단위 : 억원, %, 개소, 사업체수: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기본통계(2021))

구분	총보증공급(25%)		보증잔액(25%)		대위변제(25%)		재정자립도(10%)		GRDP(10%)		사업체수(5%)		비율 합계	'24년 출연액	'25출연기준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자립도	비율	금액	비율	업체수	비율			1차	기준*	요청액*
순시 군	156,639	25	24,359	25	5,142	25	260.7 0	10	1,129,497	10	466,10 7	5	100	144.5	205	205	216.5
거창 군	3,256	0.52	494	0.51	70	0.34	7.94	0.33	16,453	0.1 5	9,089	0.10	1.95	4.5	3.99	4	4.5

\* 기준금액 산정(15배수 적용기준) : 0.25 또는 0.75 기준으로 0.5단위 반올림 ex) 2.44 → 2.5 / 19.74 → 19.5 로 반영

\*\* 최종 요청금액 산정 : Max['25년 기준금액, '24년 실제출연금] 로 산정하며, '25년 출연목표인 기준금액과 보증공급 확대를 위해 시군 출연 요청액 별도 운영

\*\*\* '25년 출연 요청금액을 초과하여 출연 가능. 출연 기준금액 초과하는 경우 운용배수 15배수 적용

### ※재정자립도 비율 산정내역('24년 기준,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

구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시·군	창원시	김해시	양산시	진주시	거제시	사천시	함안군	창녕군	밀양시	통영시	고성군	함양군	산청군	남해군	하동군	합천군	의령군	거창군
자립도	30.60	27.97	25.09	19.70	16.86	14.85	14.57	13.44	13.02	12.54	10.30	10.18	9.31	9.25	8.94	8.10	8.04	7.94
점수	1.4/18	1.35/18	1.3/18	1.25/18	1.2/18	1.15/18	1.1/18	1.05/18	1.0/18	1.0/18	0.95/18	0.9/18	0.85/18	0.8/18	0.75/18	0.7/18	0.65/18	0.6/18

## 참고2

# 거창군 정책자금 운용배수별 보증규모(예)

(단위:억원)

구분	'25년 요청액	100% 출연시		70%이상 출연시		70%미만 출연시	
		요청액(100%기준)	12배	요청액(70%기준)	12배	요청액(50%기준)	12배
거창군	4.5	4.5	67.5 (4.5×15배)	3.15	37.8 (3.15×12배)	2.25	27 (2.25×12배)

\* 2025년도 거창군 출연액 4.5억원의 15배수 적용 ⇒ 67.5억원 보증공급



# 거창화강석 연구센터 출연 동의안

의안 번호	2024 - 118
----------	------------

제출자	거창군수
-----	------

## 1. 제안이유

가. 「거창화강석 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에 따라 거창화강석연구센터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출연금을 지원코자 함

## 2. 주요내용

가. 출연개요

- 1) 근거법령 : 「거창화강석 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제7조 및 제9조
- 2) 대 상 : 재단법인 거창화강석연구센터(이사장 구인모)
- 3) 사 업 비 : 220백만원(출연 예정금액)  
- 2025 예산편성 요구사항 (단위 : 백만원)

사업기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출연금	180	260	240	240	220

※ 2024년 출연금 240백만원(2024년 대비 20백만원 감액)

- 4) 사업내용 : (재)거창화강석연구센터 운영비 지원

나. 예산지원 사유

- 1) 거창화강석 연구센터는 기업애로사항 지원, 거창화강석 기술개발 지원, 석재원산지 검증 등을 통해 지역 화강석 산업 발전에 기여
- 2) 거창 석재산업 발전의 중추 기능을 맡고 있는 거창화강석연구센터의 원활한 거창석재산업 지원과 연구활동을 위한 운영비 지원

다. 2025년 화강석 연구센터 주요사업

- 1) 국제공인시험기관 및 조달물자 전문검사기관 운영
- 2) 기업지원 및 연구개발 성과 활용
- 3) 거창화강석 석재산업 육성 사업 추진

## 3. 관련법규 및 조례

가. 「거창화강석 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제7조 및 제9조

## 4. 참고사항

- 가. 출연 기관현황 : 붙임 1  
나. 관계법령 : 붙임 2

**I 연구센터 일반현황**

□ **설립근거**

- 민법 제32조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 소관 비영리 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비영리 법인 설립허가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 거창화강석 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 **연구센터 현황**

- 법 인 명 : 재단법인 거창화강석연구센터(이사장 : 거창군수)
- 법인허가(설립등기) : 2007. 1. 31.(자본금 : 10백만원(거창군 출연))
- 임원현황 : 이사장 외 12명 (이사 10, 감사 2, 간사 1)
- 직원현황 : 총 7명(센터장 1, 연구직 3, 생산직 3)

성 명	직 책	담 당 업 무	학위/자격
최태환	연구센터장	연구센터 업무 총괄 / 기업지원 / 협력네트워크	학사/'가'
정영일	책임연구원	시험기관 총괄 / 법인 운영 / 사업 관리 / 기술개발	석사/'가'
이승안	연 구 원	시험기관 품질 및 기술업무 지원 / 채석기술 지원	학사/'다'
문아인	연 구 원	품질시험실무 / 교육콘텐츠 개발	학사/'마'
이진호	생산팀장	기능석재 공장운영 책임, 품질시험실무 등	학사/'다'
변태식	사원	품질시험실무 및 보유 장비운영 등	학사/'마'
박지훈	사원	품질시험실무 및 보유 장비운영 등	고졸/'마'

## II

# 연구센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성과

### □ 2024년도 성과목표 및 실적

구 분		'24년도 성과 목표	'24도 실적 (9월 23일 기준)
기업지원 (석산/가공)	기업애로사항 지원	20건	15건
	원산지 검증 지원	2건	-
	시험분석 지원	600건	520건
	채석/사면 평가 지원	1건	1건
	석재 대외업무 지원	20건	9건
	홍보 마케팅 지원	10건	2건
학술연구용역	24 석재 품질 분석 외	3건	3건
연구개발	기술개발 및 제품화	2건	2건
경영수익	공인시험기관 운영	180,000천원	103,884천원
	채석/사면 평가 지원	15,000천원	15,000천원
	학술연구/기타 수익금	85,000천원	50,000천원
	합 계	280,000천원	168,884천원

### □ 주요업무 추진실적

#### ○ 석재관련 기업지원 및 애로사항 해결

- ▶ 석재가공부산물 재활용 방안 및 유해성 분석 지원
- ▶ 라돈, 방사능 등 유해성 분석을 통한 거창화강석 품질우수성 확보
- ▶ 홍보물 편집 및 제작 요청에 따른 제작 지원 등





○ 석재관련 대외업무 지원 및 네트워크 활동

- ▶ 골재자원조사 착수보고회 및 중간점검 워크숍 참가
- ▶ 석재 품질분석 전문가 간담회 참석
- ▶ 신성범 국회의원 후보자와의 석분처리를 위한 간담회 참석
- ▶ 신재화 군의원과의 석분처리를 위한 간담회 참석
- ▶ 불합리한 환경분야 규제개선 서부권역 토론회 참석
- ▶ 김홍섭 군의원과의 석분처리를 위한 간담회 참석



○ 공공·민간부문 연구용역 수행

- ▶ 한국임업진흥원 “2024 석재 품질 분석” 용역 수행
- ▶ 국토교통부 “2024 골재자원조사/골재 불소 발생평가” 용역 수행
- ▶ 한국지질자원연구원 “2024 석재자원조사 ” 용역 수행 등
- ▶ 2024 토석채취허가지 항공촬영 및 지적 분석



○ 거창화강석 품질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 ▶ 거창화강석, 조달물품 및 수입석 대상 석재 유해성(라돈) 분석
- ▶ 거창화강석, 조달물품 및 수입석 대상 석재 유해성(석면) 분석
- ▶ 거창화강석, 조달물품 및 수입석 관리를 위한 대자율 측정





- 거창화강석 홍보/마케팅 업무 지원
  - ▶ 거창화강석 조형물 제작 관련 자문 및 홍보
  - ▶ 거창화강석 품질 관련 자문 및 홍보
  - ▶ 조달물자 전문검사 기관 홍보

## □ 석재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성과

- 조경석 단체표준 규격 제정을 통한 거창기업 매출액 증대
  - ▶ 2012년 조경석 단체표준 제정을 위한 용역 수주 및 단체표준 제정
  - ▶ 2013년 조경석 조달다수공급자(MAS) 물품 등록

<거창 관내 기업 조경석 매출액>

구 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거창 업체수 (개)	3	5	7	8	9	11	10	9	11	11	9
매출액 (억)	37	25	92	86	87	94	88	109	139	101	135

- 석재 원산지 검증활동 지원 효과
  - ▶ 국내 유일의 석재 원산지 검증기관 → 거창화강석 사용 유도
  - ▶ 원산지 검증에 따른 효과 : 거창화강석 보호 및 업체 매출 증대
  - ▶ 23년 울산지역 관급 물량에 대한 관내업체 계약이 약 86% 정도 체결됨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	2019	2020	2021	2022	2023
울산관급물량	1,819	2,958	2,482	1,854	2,000	1,497
울산 "ㄷ"석재	1,114	-	-	-	-	-
거창 관내업체	520	1,813	1,918	1,371	1,402	1,291
타 지역 업체	202	1,145	564	483	598	206
거창업체 점유율	28.6%	61.3%	77.3%	74.0%	70.1%	86.2%

- 국제공인시험기관 및 조달물자 전문검사기관 운영

- ▶ 2013년 석재 관련 5개 시험항목 인정
- ▶ 2020년 골재 관련 8개 시험항목 인정
- ▶ 조달청 조달물자 전문검사기관 지정(2013년) 및 운영 (단위 : 억원/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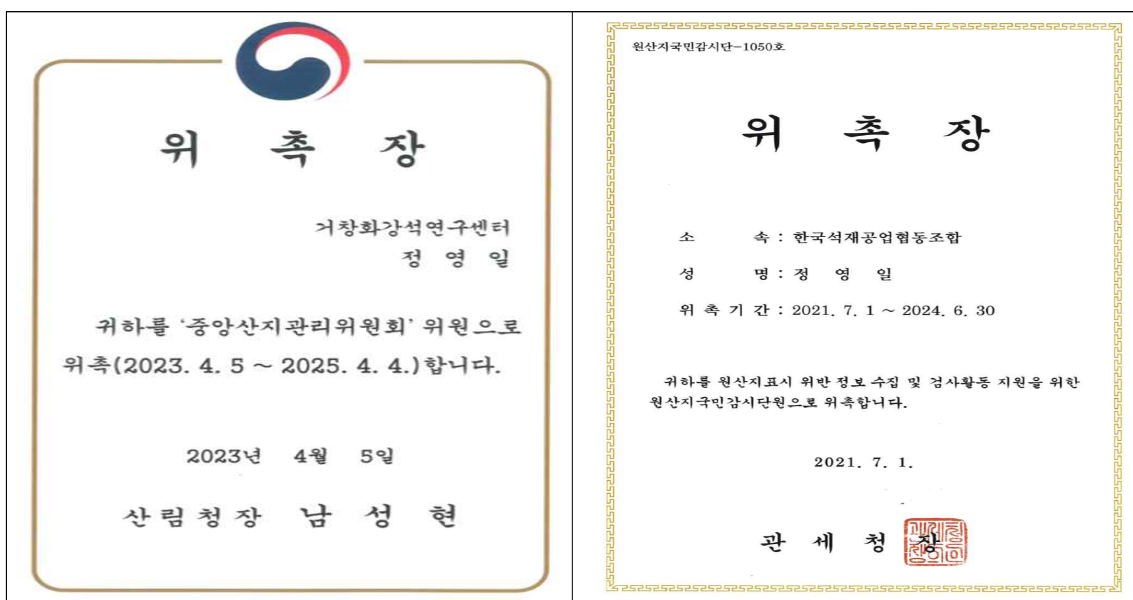
연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매출액	2.1	1.9	2.2	1.8	1.8
건수	359	605	584	595	623

○ 연구개발 성과

- ▶ 거창화강석 및 조달물품대상 석재 원산지 관리를 위한 전암대자율 측정
- ▶ 거창화강석 및 조달물품대상 석재 유해성(라돈, 석면) 분석

○ 네트워크 활동을 통한 연구센터 및 거창화강석 인지도 증대

- ▶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위원 위촉(산림청) : 정영일 책임연구원  
2023. 4. 5 ~ 2025. 4. 4 (2년)
- ▶ 원산지 국민감시단원 위촉(관세청) : 정영일 책임연구원  
2021. 7. 1 ~ 2024. 6. 30 (3년)



□ 석분슬러지 처리 및 폐석 재활용 지원

○ 석분슬러지 유해성 분석 지원

- ▶ 석재 가공시 발생하는 석분슬러지의 처리 및 재활용 방안을 모색
- ▶ 석분슬러지 관련 각종 시험, 분석업무 등 기업지원 및 애로사항해결
- ▶ 석분슬러지 유해성 분석 ⇒ 관내 업체 유해성 분석지원

○ 폐석 처리 및 재활용 지원

- ▶ 폐석을 폐기물이 아닌 제품으로 등록 유도하여 새로운 재화가치 창출
- ▶ 한국골재채취업협동조합 단체표준 제품인 잡석으로 종목 추가 등록 (전 가공업체 등록 권장)
- ▶ 유상처리 되던 잡석의 판매 매출 발생 : 200,000원/대(25톤 덤프)

## □ 연구개발을 통한 성과 활용

연구개발 추진내용	실적 및 성과	기업체 공동개발 및 기술지원	연구센터 수익사업 기업체공동기술개발
석제품질 평가	석재원산지 검증/판별방법	석재원산지검증 조달청원산지검증	원산지검증수수료
	국제공인시험 기관인정	거창업체(50%할인) 시험분석지원	거창지역/전국 시험분석 수수료
	단체표준 시험기관지정	전국석재관련업체 시험분석 지원	가공조경석형상평가 기술개발용역수행 (특허1건등록/2건출원)
급경사지 안정성평가 기술개발	급경사지안정성 평가분석	사면안정성평가/보강 (3개업체 지원)	거창 및 타 지역 사면안정성평가
	사면안정성평가 시스템 구축	석산인허가관련지원  석산 환경재해평가 및 사면분석 지원	드론을 이용한 사면 평가/지형변화 특허1건 출원
석분슬러지 광물자원화	석분슬러지 유해성 분석	폐기물유해성평가 업무지원(22개업체)	재활용관련기술 (세라믹기술연구원)
	석분재활용 가능성 평가	폐기물 투수/다짐 시험분석지원  폐기물관련법 개정(석산복구사용)	석분활용방안 (도시건축과 연계, 특허 1건 출원)
문화관광 컨텐츠개발	디자인/실용화 제품	석재활용제품개발 (기업체 공동개발)	기업체 공동기술 개발 컬링스톤 상용화
	CNC 장비활용 개발	CNC 장비 활용 가공제품제작지원	
석재표면 처리기술 개발	컬러석재 제조방법	컬러석재 시제품  샘플제작/납품	기업체 공동기술 개발 (특허 3건 출원) 한영대리석 사고석 모동석재 표면처리 (혼드, 브러쉬 등)
	석재표면 처리방법	석재표면처리기술 (기업체공동개발)	

### Ⅲ

## 연구센터 향후 추진사업

### □ 기업지원 및 연구개발 성과 활용

- 신규 아이템 발굴 및 기업 정부지원사업 추진 지원
- 석분슬러지 처리 및 재활용 지원
- 안전한 채석환경 조성을 위한 기술 지원

### □ 국제공인시험기관 및 조달물자전문검사기관 운영

- 국제규격에 따른 공인시험기관 운영을 통한 신뢰성 있는 시험서비스 제공을 통한 대외인지도 확대 및 수익 창출
- 현재 석재 분야 5개 규격, 골재 분야 8개 규격을 인정받아 운영중에 있으며, 향후 콘트리트 분야 등 시험범위 확대 추진
- 조달물자 전문검사기관 운영을 통한 석재전문기관 전문성 확립과 인지도 제고 및 수익 창출

### □ 거창화강석 석재산업 육성 사업 추진

- 지역 자원을 활용한 교육 콘텐츠 개발
  - ▶ 거창화강석과 연계한 지질과학 체험공간 조성 및 진로체험 활성화
  - ▶ 유치원생, 초등학생에게 새로운 체험형 학습기회를 제공하고 초등학교 고학년 및 중학생에게는 다양한 진로체험 기회 제공
- 석산을 활용한 관광자원화 사업 개발
  - ▶ 거창군 산림휴양관광 100만 시대 도약 관광 다변화 사업에 맞추어 가행석산 및 폐석산을 활용한 관광자원화 활성화 필요성 대두
  - ▶ 자원의 관광다변화 사업으로 연계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새로운 자원의 가치관 확립

### □ 기대효과

- 지역에서 차지하는 거창화강석 산업의 중요성 인식 제고
- 석재산업을 선도하는 거창군 위상 및 거창화강석 산업 부흥 기대

**【 출연기관 현황 】**

**재단법인 거창화강석연구센터**

설립근거	법률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민법 제32조			전화번호 : 055-943-3924			
	규칙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			홈페이지 : granite.re.kr			
주요연혁	법인설립허가 : '07. 1. 31		기관형태 (출자, 출연)	출연기관			
인원현황 ('24. 9. 현원기준)	계		정규직	비정규직			
	7명		7명	0명			
임원 ('24. 9. 기준)	직책 (직책명)	성명 (익명처리)	주요경력 (가장 최근의 1개 경력만 기재)	임기 (법령상 정해진 임기 기재)			
	이사장	구○○	거창군청(거창군수)	당연직			
	상임이사	최○○	(재)거창화강석연구센터장	"			
	비상임이사	조○○	경남도립거창대학 산학협력단장	"			
		이○○	NH농협은행 거창군지부장	"			
		한○○	거창석재조합(주) 대표	"			
		이○○	거창석산협회장	"			
		김○○	거창군청(경제기업과장)	"			
		주○○	경남도립거창대학 교수	'22. 3. 21. ~ '25. 3. 20.			
		김○○	한국승강기대학 교수	'22. 3. 21. ~ '25. 3. 20.			
	임○○	한국석재공업협동조합	'22. 3. 21. ~ '25. 3. 20.				
	감사	신○○	거창군청(산림과장)	당연직			
		변○○	변범식변호사사무소 대표	'22. 3. 21. ~ '25. 3. 20.			
주요기능	거창화강석 1, 2차산업 관련 기업지원, 연구 및 개발, 품질유지 및 관리, 공인시험 서비스 등 석재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						
자본금 <sup>1)</sup> (단위:백만원)		10 (직전연도말 기준)			출자·출연액 (단위:백만원)	240	
최근3년간 예산 현황 (단위:백만원)	연도	2022	2033	2024	재무현황 (백만원) '23.12.31기준	자산	537 (자산 총액)
	예산액 <sup>2)</sup>	922	972	1,016		부채	2 (부채 총액)
	지자체 지원액 <sup>3)</sup>	260	240	240		자본 <sup>1)</sup>	535 (자본금 총액)
경영성과 (단위:백만원) '23. 12. 31. 기준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226			263		-47	

**거창화강석 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 제정) 2006.12.12 조례 제1825호

(일부개정) 2008.01.14 조례 제1878호

**제 1조 (목적)**

이 조례는 거창화강석 산업의 육성과 기술지원을 위하여 재단법인 거창화강석연구센터를 설립하고 그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1. 14)

**제 2조 (법인격 및 명칭)**

연구센터는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하며, 그 명칭은 재단법인 거창화강석연구센터(이하 “연구센터” 라 한다)라 한다.(개정 2008. 1. 14)

**제 3조 (사무소)**

연구센터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 4조 (운영 등)**

- ① 연구센터의 설립·운영 및 해산에 관한 사항은 「민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개정 2008. 1. 14)
- ② 연구센터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5조 (임원)**

- ① 연구센터에는 이사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2인을 둔다.
- ②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를 두되 임기와 임면 및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 6조 (사업)**

연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안정적인 원석확보 및 자연 친화적인 폐석산 복구기술개발사업
2. 화강석 신소재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3. 산·학·연 공동기술연구개발과 시험생산 등 실용화 사업
4. 산업기술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정보유통망 구축 운영사업
5. 화강석 제품의 성능 시험 및 검사, 품질 평가 등 사업
6. 정부·지방자치단체·기업 등의 위임·위탁사업과 용역사업
7. 산업인력 교육 및 기술지도 사업
8. 그 밖에 연구센터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제 7조 (재산조성 및 운영경비)

연구센터의 설립·운영 및 사업추진에 필요한 재산과 운영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하거나 충당한다.

1.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자체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입금
3. 기타 수입금

### 제 8조 (수익사업)

연구센터는 제6조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재단설립목적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행할 수 있다.

### 제 9조 (출연금 등의 지원)

- ① 군수는 연구센터의 사업수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운영경비와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 ② 연구센터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에게 보조금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미리 사업계획과 운영방법 등을 작성·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 10조 (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군수는 연구센터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 제 11조 (업무의 위탁)

- ① 군수는 연구센터가 수행하는 사업과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사업 또는 업무를 연구센터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업무 위탁시 이에 수반되는 경비를 별도 협약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 제 12조 (보고 및 검사)

군수는 필요한 경우, 연구센터의 경영상황 및 중요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 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878호 거창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제정 2008.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서북부경남거점APC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2024 - 119
----------	------------

제출자	거창군수
-----	------

## 1. 제안이유

가. 서북부경남거점APC의 민간위탁 운영 관련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위탁 기간 연장을 함으로써 서북부경남거점APC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시설명 : 서북부경남거점APC

나. 위치 : 거창군 거창읍 거함대로 3372

다. 시설규모 : 부지 36,376㎡ / 시설 연면적 12,603㎡

라. 주요시설 : 선별장 5,850㎡, 저온저장고 3,577㎡, 기타 3,176㎡

마. 위탁기간 : `24. 11. 1. ~ `28. 6. 30. (3년 8개월간)

※ 직전 위탁기간 : 2022. 1. 1. ~ 2024. 12. 31.(3년간)

※ 후지수매를 위해 일정을 최대한 당겨서 추진

바. 위탁사무 : 거창군 서북부경남거점산지유통센터 운영 및 관리  
(농산물 수집·출하·판매기능 통합 운영, 시설물 관리)

사. 공모 및 평가

1) 모집방법 : 전국 공개모집(군 홈페이지 공고 / 8일)

2) 평가방법 : 서면평가(90점) + 발표평가(10점) ± 가점(5점) 및 감점(20점)

- 서면평가 : 정량평가(50점) + 정성평가(40점)

- 발표평가 : 정성평가(10점)

※ 정량평가 : 담당자 및 담당주사 확인 / 정성평가 : 위원회 심의

3) 평가주체 : 서북부경남거점APC 운영위원회(위원 중 응모업체 주주 배제)

아. 선정방법

1) 심사사항 : 서류심사 및 발표심사

2) 수탁자 선정 : 심사사항 득점의 종합점수 순위로 결정(70점 이상)

### 3. 참고사항

가. 민간위탁 추진계획 : 붙임 참조

나. 관련법령

-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제35조, 제36조
- 3)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5조, 제7조, 제15조, 제17조
- 4) 「거창군 서북부경남거점산지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4조, 제7조, 제15조, 제17조

# 서북부경남 거점APC 민간위탁 운영 공모 추진계획

◆ 서북부경남 거점APC 민간위탁 운영 전국공모 추진계획 입니다.

## I 법적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제35조, 제36조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5조, 제7조, 같은조례 시행규칙 제2조
- 「거창군 서북부경남거점산지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4조, 제7조, 제5조, 제17조

## II 공모개요

- 위탁대상
  - 시설명 : 서북부경남 거점산지유통센터(APC)
  - 위치 : 거창읍 거함대로 3372
  - 시설규모 : 부지 36,376㎡ / 시설연면적 12,603㎡
  - 주요시설 : 선별장 5,850㎡, 저온저장고 3,577㎡, 기타 3,176㎡
  - 위탁기간 : '24. 11. 1. ~ '28. 6. 30. (3년 8개월간)
  - 위탁사무 : 거창군 서북부경남거점산지유통센터 운영 및 관리  
(농산물 수집·출하·판매기능 통합 운영, 시설물 관리)
  - 사용료 예정금액 : 해당연도 매출액의 1천분의 5이내  
(매년 거점산지유통센터 운영위원회 의결)
- 평가사항 : 서북부경남거점APC 운영 위탁업체 적정성 평가

### Ⅲ

## 세부내용

### ① 공모 및 평가

- 모집방법 : 전국 공개모집(군 홈페이지 공고 등 / 8일)
- 평가방법 : [서면평가(90점) + 발표평가(10점)] ± 가점(5점) 및 감점(20점)
  - 서면평가 : 정량평가(50점) + 정성평가(40점)
  - 발표평가 : 정성평가(10점)
- ※ 정량평가 : 담당자 및 담당주사 확인 / 정성평가 : 위원회 심의
- 평가주체 : 서북부경남거점APC 운영위원회(※ 위원 중 응모업체 주주 배제)

### ② 평가지표 및 배점

- 서면 평가(90점)
  - 업체현황 평가(정량평가)(50점) : 담당자 및 담당주사 확인
  - 사업수행 계획(정성평가)(40점) : 위원회 심사
- 발표 평가(10점)
  - 발표능력, 추진의지(정성평가) : 위원회 심사
- 가점 및 감점
  - 가점(5점) : 지역사회공헌(4점), 수상 실적(1점)
  - 감점(20점) : 위수탁 계약 위반사항

### ③ 선정방법

- 심사사항 : 서류심사 및 발표심사
  - 서북부경남거점APC운영위원회에서 위탁 신청업체가 제출한 서류 및 사업계획서의 적정성 여부 검토
  - '위탁업체 선정 평가지표 및 배점'과 관련한 세부평가 기준항목에 점수를 부여하고 항목별로 합산
  - 서북부경남거점APC운영위원회에서 위탁 신청업체를 심사 평가하여 수탁자 선정 후 협약 체결

- 배점기준 : 100점 만점 ± 가점 및 감점(5점 ~ △20점)
  - 서면평가 : 정량평가(50점) + 정성평가(40점)
  - 발표평가 : 정성평가(10점)
    - ※ 정량평가 : 담당자 및 담당주사 확인 / 정성평가 : 위원회 심의
- 수탁자선정 : 심사사항 득점의 종합점수 순위로 결정(70점 이상)
  - ※ 동점자 발생 시 사업수행능력 점수가 높은 자, 운영능력 점수가 높은 자, 재무구조 점수가 높은 자의 순에 따라 선정

## IV 세부추진계획

- 신청업체 준비사항
  - 평가지표에 따라 일반현황, 사업실적 등 기초자료 및 평가지표 실적 파악 및 평가 증빙자료 제출
- 추진일정
  - '24. 10. 8. ~ 10. 16.(8일간) : 위탁업체 모집 공고
  - '24. 10. 17. ~ 10. 18.(2일간) : 신청서 접수
  - '24. 10. 24.(수) : 서북부경남거점APC 운영위원회 개최(예정)
    - ⇒ 위탁 신청업체 정성평가 및 PPT 발표심사
    - ⇒ 거점APC 운영위원회에서 수탁자 선정
  - '24. 11. 상순 : 선정된 수탁자 협약 체결
  - '24. 11. 상순 : 새로운 수탁자 선정 및 계약 시 조공에 협약 해지 공문 발송 예정(연말까지 조건부 승인 : 후지사과 수매 및 인수인계 철저 등 안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익계약을 할 수 있다. <신설 2015. 1. 20.>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여 매년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5. 1. 20.>

④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신설 2010. 2. 4., 2015. 1. 20., 2021. 4. 20.>

⑤ 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20조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0. 2. 4., 2015. 1. 20., 2021. 4. 20., 2022. 11. 15.>

⑥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용료를 관리위탁받은 행정재산의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대된 이용료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 2. 4., 2015. 1. 20., 2021. 4. 20.>

⑦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 2. 4., 2015. 1. 20.>

⑧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2. 4., 2015. 1. 20., 2021. 4. 20.>

1. 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2. 관리위탁의 기간 및 수탁재산의 관리
3. 제6항에 따른 이용료의 경비에의 충당
4. 이용료 증대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 수입으로의 대체
5.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08. 12. 26.]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때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여야 한다.

②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 6. 21., 2015. 7. 20.>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위탁을 갱신할 수 없다. <신설 2013. 6. 21., 2015. 7. 20.>

1. 관리위탁한 행정재산을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법 제27조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가 제1항에 따른 관리위탁을 받을 자격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관리수탁자가 관리위탁 조건을 위반한 경우
4. 관리위탁이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⑤ 관리수탁자가 수탁재산의 일부를 사용·수익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위탁기간 내에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21.>

[전문개정 2009. 4. 24.]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제10조(입찰공고)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입찰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거나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찰공고 또는 통지의 방법·내용·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2. 6.]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3조(입찰공고)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부치려는 경우에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공고를 병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찰공고를 한 후 사업내용, 예정가격, 입찰 참가자격, 입찰 및 계약의 조건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는 원래의 입찰공고를 취소하고 새로 공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공고 내용에 관련 법령을 잘못 표기하는 등 경미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정정공고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공고기간의 남은 일수에 5일 이상을 가산(加算)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13.>

### 제35조(입찰공고의 시기)

① 입찰공고는 그 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7일 전에 하여야 한다.

②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5조제3항에 따라 현장설명을 하는 경우에는 현장설명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7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에 따른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현장설명일 전날부터 기산하여 3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공사입찰의 경우로서 현장설명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7일
2.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15일
3. 추정가격이 50억원 이상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 30일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경우 40일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5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16. 1. 15.>

1. 제19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의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국가사업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사업의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 예방·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제2호 또는 제3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입찰을 긴급히 입찰공고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⑤ 제18조에 따른 규격입찰이나 기술입찰, 제43조와 제44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또는 제44조의2에 따른 경쟁적 대화방식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격·기술 입찰서 또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24., 2019. 6. 25.>

1. 추정가격이 1억원 미만인 경우 10일
2.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20일
3.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40일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제18조에 따른 규격입찰이나 기술입찰, 제43조와 제44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또는 제44조의2에 따른 경쟁적 대화방식에 의한 계약이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16. 1. 15., 2019. 6. 25.>

### 제36조(입찰공고의 내용)

입찰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2. 입찰 또는 개찰의 장소 및 일시
3.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현장설명의 장소·일시·참가자격 및 참가의무 여부에 관한 사항
4.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5.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세입조치에 관한 사항
6. 낙찰자 결정방법(제42조제1항 본문 또는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일 및 낙찰자 통보예정일을 포함한다)
7. 계약의 이행예정기간
8. 계약하려는 조건을 공시하는 장소
9. 제39조제4항에 따른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10.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교부 장소와 교부비용
11. 추가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기관의 주소 등
12. 우편입찰 등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와 입찰서를 송부할 주소
13. 제39조제1항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14. 법 제29조에 따른 공동계약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공동계약이 가능하다는 뜻 및 공동계약의 이행방식(법 제29조제2항 본문에 따른 공동계약인 경우에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의 자격제한사항 및 제88조제6항에 따른 지역 업체의 참여비율을 포함한다)
15. 제94조에 따른 입찰의 경우에는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 등에 관한 사항
16.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경우로서 제안요청서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장소 및 일시에 관한 사항
17. 입찰참가 등록 및 입찰 관련 서류에 관한 사항
18. 입찰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의 이의신청 방법
19. 입찰 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의 신고에 관한 사항
20.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하여 계약의 목적이 되는 물품·공사·용역 등을 구성하는 재료비·노무비·경비의 책정기준,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및 비율
21. 그 밖에 입찰에 필요한 사항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

① 군수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군민생활과 직결된 단순행정사무(개정 2013.6.12)

② 군수는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제6조에 따른 거창군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민간위탁 할 수 있다.(개정 2013.6.12)

③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도위임사무는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자치사무에 있어 같은 수탁기관에 재계약 할 때에도 위탁기간 만료일 60일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및 후단신설 2013.6.12)

④ 군수는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6.12)

### 제9조(협약체결 등)

① 군수는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타조례개정 2021.9.29.)

② 협약서에는 수탁기관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액 및 협약내용 위반 시의 무이행 등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군수는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협약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민간위탁 사무처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3.6.12)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2조(의회동의)

①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민간위탁 하는 경우 위탁하려는 사무의 처리 소관부서(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을 포함한다. 이하 “소관부서”라 한다)가 수탁기관 모집을 위한 공고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을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2항에 따른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의 제출절차는 의회에 제출하는 일반안건의 예에 따른다.

# 거창군 서북부경남거점산지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 제4조(기능)

유통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산물 및 그 가공식품의 집하·선별·포장·저장·판매
2. 농산물의 세척·절단·살균·포장 등 신선편이 상품의 생산 및 판매
3. 전국 대형 유통업체와 도·소매업,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판매
4. 농산물의 판매 확충을 위한 홍보 및 시장정보 수집
5. 그 밖에 유통센터 설치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 제7조(유통센터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유통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유통센터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2021.12.29.)

1. 유통센터를 위탁 운영할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선정 및 위탁 취소에 관한 사항 (2021.12.29.)
2. 유통센터 위탁 이용료에 관한 사항
3. 유통센터의 위탁 관리 및 운영에 드는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17조(수탁자 선정)

군수는 제16조제2항에 따른 위탁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농산물의 수집·판매능력, 투자계획, 자금조달계획, 경영계획, 인력확보 및 농산물유통에 대한 경험 등을 기준으로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항삭제및개정2021.12.29.)



# 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2024 - 120
----------	------------

제출자	거창군수
-----	------

## 1. 제안이유

- 가. 시설 개선, 인력 채용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병원은 정상화되었으나, 병원 운영에 대한 전문성 부족으로 지속적 직영은 어려운 상황임
- 나. 치매 환자와 가족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높은 수준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함
- 다. 이에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거창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위탁시설 현황

명칭	위치	부지면적 (연면적)	주요시설	비고
거창군립 노인요양 병원	거창읍 거창읍 운정3길 180	4,283㎡ (3,007㎡)	▶ 지하1층 : 기계실, 보일러실, 발전실 ▶ 1층 : 외래진료실, 물리치료실, 약제실, 행정실, 진단검사실 ▶ 2, 3층 : 간호사실, 입원병실 ▶ 4층 : 치매안심병동, 식당 등	126병상 직원 44명

※ 환자수 : 75명(2024. 9. 30. 기준) / 그린리모델링 공사로 환자 전원 조치

### 나. 민간위탁 내용

- 1) 위탁사무 : 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 병원운영 및 시설물 관리 등
- 2) 위탁기간 : 2025. 1. ~ 2029. 12.(5년간)
- 3) 선정방법 : 공개모집(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에서 선정)
- 4) 선정기준
  - 수탁자의 적격성, 병원 운영 능력(인력, 재정, 기술) 등을 고려
  -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사평가

다. 그간 운영 상황

- 1) 아림의료재단 거창서경병원 : 2006. 10. ~ 2023. 3.
- 2) 거창군 임시직영 : 2023. 3.
- 3) 창녕서울의료재단 : 2023. 4. 1. ~ 2023. 5. 11.
- 4) 거창군 직영 : 2023. 5. 12. ~ 현재

3. 동의(승인)사항

가. 관련근거

- 1) 「치매관리법」제16조의3(공립요양병원의 설치 및 운영)
- 2)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 3) 「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제4조(설치·운영)

나. 동의(승인내용) : 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 민간위탁 동의

4. 향후 추진일정

- 가. 민간위탁 선정 공고 및 접수 : 2024. 11.
- 나. 위탁 업무 개시 : 2025. 1.

5. 참고사항

- 가. 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 민간위탁 운영계획(안) 1부.
- 나. 관계법령 1부. 끝.

# 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 민간위탁 추진 계획

## I 추진배경

- 시설 개선, 인력 채용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병원은 정상화되었으나, 병원 운영에 대한 전문성 부족으로 지속적 직영은 어려운 상황
- 병원 직원(기간제 근로자) 연속 고용(공무직 전환) 가능 기간 도래로 수탁 운영 필요

## II 관련근거

- 「치매관리법」 제16조의3(공립요양병원의 설치 및 운영)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 등)
- 「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제4조(설치·운영)제1항

## III 현 황

### □ 병원 일반현황

- 위탁기관 : 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
- 위치/면적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운정3길 180 / 연면적 3,007㎡  
※ 대지면적 : 4,283㎡
- 운영인력 및 병상수

직원수	진료부	간호부	의료지원팀	행정팀	병상수	비 고
44명	3명(봉직의 2, 공보의 1)	23명	5명	13명	126	

- 운영방법 : 거창군 직영( '23. 5. 12. ~ 현재)
- 환 자 수 : 75명 ※ 2024. 9. 30. 기준
  - 최대입원환자수 112명(2024. 3.월)
  - 그린리모델링 공사로 환자 전원 조치 : 24명



## □ **그간 위·수탁 진행상황**

- 아림의료재단 거창서경병원 : 2006. 10. ~ 2023. 3.
- 창녕서울의료재단 : 2023. 4. 1. ~ 2023. 5. 11.
- 거창군 직영 : 2023. 5. 12. ~ 현재

## **IV** **직영 운영 결과**

### □ **병원 운영 정상화를 위한 노력**

- 보건소 보건정책과 공공의약담당 업무 총괄(직원 3명 파견)
- 보건소 ⇔ 병원직원 주1회 정기회의 개최
- 노후화 시설 수리, 장비교체, 인력채용 등
- 보건소 및 치매안심센터 연계로 신체 및 인지 재활프로그램 운영
- 치매환자 다양한 인지강화 프로그램 운영(가족 자조모임 포함)
- 유관기관 인프라 구축을 통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 □ **직영을 통한 공공병원 이미지 제고(장점)**

- 요양병원 3주기 인증 획득 : 2023. 10. 5.
- 급성기 병원 퇴원 후 요양병원 입원 필요 환자 군립노인요양병원 우선 선호
- 치매환자 맞춤형 치료 돌봄 서비스로 환자 및 보호자 만족도 향상
- 병원 운영 전반 확인으로 향후 위·수탁 운영 시 적절한 지도 감독 가능
- 전국 시·군립요양병원 수탁자 선정 애로로 직영 운영\* 지속 문의
  - \* 고령군립요양병원 직영체제 전환(8월) ⇒ 벤치마킹 3회, 수시 유선문의
  - \* 전남 영광, 광주 서구 그 외 자치단체 다수 문의

## V

### 추진계획

#### 위탁개요

- 위탁기간 : 2025. 1. ~ 2029. 12. / 5년간
- 위탁방법 : 공개모집(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
- 위탁사무 : 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 병원운영 및 시설물 관리 등
- 위탁업무
  -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의 치료 및 운영에 대한 계획 수립
  -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에 대한 전문적인 치료 및 입원 진료
  -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에 대한 장·단기적인 요양 서비스
  - 그 밖에 치매 및 노인성질환에 관련된 사업

#### 신청자격

- ① 의료법인(법인의 대표자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3년 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는 사람) 및 종합병원을 2년 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는 사람
- ② 「민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비영리법인으로서 병원을 개설할 수 있는 사람
- ③ 의사로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10년 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위탁방향

- 위탁기간 : 5년(사업의 전문성 및 연속성 부여)
- 선정기준 :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능력, 기술보유 정도 등을 종합적 평가
- 운영방식 : 독립채산제
- 병원수익관리 : 병원운영비 및 시설물 유지관리 등에 재투자

## VI

### 향후계획

- 2024. 11. : 민간위탁 공고 및 접수
- 2025. 1. : 위탁 업무 개시

## □ 치매관리법

## ○ 제16조의3(공립요양병원의 설치 및 운영)

- 지방자치단체는 치매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이하 “공립요양병원”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립요양병원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제3항에 따라 공립요양병원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공립요양병원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부지 또는 건물 등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산을 기부채납한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 공립요양병원 운영의 위탁기간은 그 위탁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운영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5년 단위로 위탁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 ○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 군수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 군수는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제6조에 따른 거창군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민간위탁 할 수 있다.
- 군수는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 □ 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 제3조(업무) 노인요양병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의 치료 및 운영에 대한 계획 수립
-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에 대한 전문적인 치료 및 입원 진료
-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에 대한 장·단기적인 요양 서비스
- 그 밖에 치매 및 노인성질환에 관련된 사업

○ 제4조(설치·운영) 군수는 노인요양병원을 설치·운영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위탁할 수 있으며 운영실적을 평가하여 계약갱신 할 수 있다

- 의료법인(법인의 대표자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3년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는 사람) 및 종합병원을 2년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민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병원을 개설할 수 있는 사람
- 의사로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10년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는 사람

## □ 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 제8조(회계 및 공유재산관리)

- 수탁자는 병원의 운영에 관하여 독립회계로 별도 회계처리하여야 하고, 진료비 등 수익금은 병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한다.
- 병원의 회계는 병원의 정관 및 회계규정에 의하되,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고,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를 적용한다.
- 수탁자는 회계연도 종료 2월 이내에 공인회계사의 결산검사를 받아야 하며, 그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행정재산의 관리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